

제7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2. 26.(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(2011.11.30)에서 의결한 ‘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’에 해당됨

2 의결사항

가.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76(서)-437)

- 제59차 위원회('11.10.24) 보고 후,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마련된 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① 디지털 전환 실적 평가 기준 마련(신설,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1, 3)
 - '운영영역'에 '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' 평가항목을 신설하고, 지상파는 '13년, SO·위성은 '15년 방송실적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 - 배점은, 지상파TV 100점(총점 900점→1,000점), SO·위성 50점(총점 500→550점)
- ② 인증방송장비 평가기준 마련(신설,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1~9)
 - '운영영역'의 「방송발전을 위한 노력 / 방송기술투자 평가」 항목에 TTA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 인증 제품 투자에 대해 평가를 추가
 - 배점은 지상파 TV 5점, 그 외 매체는 지상파 TV의 2/3로 환산
 - ※ '방송기술투자평가' 항목의 배점 : 지상파 TV(30점), 지상파 R 및 비지상파(20점)
- ③ 종합편성 PP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(신설,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4)
 - 종합편성PP가 전반적으로 지상파와 PP의 중간적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, 모든 영역 및 평가항목에서 지상파TV(900점)와 보도 PP(500점) 점수의 1/2을 적용(총점 700점)
 - 매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영역의 '매체특성에 따른 편성 적정성' 항목에서 '제작프로그램 편성' 평가항목을 신설

○ 향후 일정

- 공고(관보 게재) 후 시행

'11년 12월 30일

나.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1-76(서)-438)

- 「방송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, 원안대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

<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명단(총 9인) >

구 분	성 명	성 별	전 · 현 직
위원장	김충식	남	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
방송 등 언론 분야	김윤영	남	전 원주MBC 사장
	이진희	남	스포츠한국 사장
	김세원	여	고려대 국제대학원 초빙(겸임) 교수
교육, 문화계	강규형	남	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
	정인숙	여	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
법조계	장연화	여	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
시청자 단체	강혜란	여	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
기타 전문가	윤장신	남	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

※ 임기 : 위촉일로부터 1년

다.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 사업자 제재조치에 관한 건

- (2011-76(서)-439~440)

-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, 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으로 방통위로부터 ‘주의’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2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해당 사업자명 및 조치내용 >

법인명	위반내용	조치내용	적용법령
(주)CJ헬로비전아라방송	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	경고	방송법제100조 제1항제4호
(주)씨앤엠 경기케이블티브이	단체수신 계약시 개별세대 가입동의 미이행	경고	

라. 「도메인이름관리준칙」·「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」·「망식별번호관리준칙」 일부개정안 승인에 관한 건 - (2011-76(서)-441)

- 분쟁대상 도메인의 수수료 대납 근거 조항 신설 등 인터넷주소관리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이 요청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의한 3개 인터넷관리준칙(도메인이름관리준칙, IP관리준칙, 망식별번호관리준칙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
※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「도메인이름관리준칙」·「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」·「망식별번호관리준칙」 제개정안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이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

○ 주요 내용

- ① 분쟁대상 도메인의 수수료 대납 근거 조항 신설(「도메인이름관리준칙」 개정안 제13조 제3항)

- 분쟁조정 진행 중 해당 도메인이 말소되지 않도록 등록인이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이 수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

② 「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」, 「망식별번호관리준칙」 부칙 중 승인 주체 변경

- “정보통신부장관” → “방송통신위원회”

③ 「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」 중 부칙 중 관련법명 변경

- “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제6조” → “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제7조”

마.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76(서)-442호)

-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무선보청기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등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무선설비규칙 및 관련 고시(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무선보청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적 조화

- 노인/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무선보청기에 대한 국내규정을 ITU의 국제규정에 맞게 정비
- 3.155~3.4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방식의 무선보청기를 ITU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고, 측정위치를 명확하게 규정

②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게 해상 및 항공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

-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중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(SART)의 방수조건 등 국제기구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
- 국제기구의 수심 10m에서 5분 이상 방수되는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
- 중단파대/단파대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반송주파수의 국제 규정에서 삭제되어 없는 조항이 국내규정에 있으므로 삭제

③ 외국의 무선휘출용 기술기준을 고려한 출력 상향

- '11.3월 심사할당한 900MHz 주파수대 양방향 무선휘출용 서비스는 '00년에 기지국 출력 150W, 이동국 출력 1W로 기술기준을 마련하였으나,
- 최근, 새롭게 개발된 사물지능통신(M2M) 서비스의 단말기(이동국)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을 고려한 출력 상향(1W→5W 이하)

○ 향후계획

- '11. 12월 : 「무선설비규칙」 및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」 고시 공포·시행